

## 25. 엘살바도르(EI Salvador)

### ◎ 주요 변동사항

구 분	2017	2019	비 고
적용대상	근로자	근로자	자영자 : 임의적용
보험료율(가입자/사용자)	15% (7.25% / 7.75%)	15% (7.25% / 7.75%)	-
노령연금 수급요건	가입기간 25년, 60세(여성은 55세)	가입기간 25년, 60세(여성은 55세)	가입기간 30년 이상은 연령제한 없음
노령연금 지급방식	①프로그램 인출 방식 ②사보험사로부터 연금 수령 ③두가지 방식 혼합형태 중 선택 가능	①프로그램 인출 ②사보험사로부터 연금 수령 ③두가지 방식 혼합형태 중 선택 가능	-
일시금	총 계좌잔액 + 연대보증기금 납부액	총 계좌잔액 + 연대보증기금 납부액	납부기간이 25년 미만인 남성 60세, 여성 55세

### 1 근거법 제정 시기

- **최초법** : 1949년(사회보험), 1953년(사회보험기금), 1968년(노령·장애·유족보험, 1969년 시행)
- **현행법** : 1996년(개인계좌, 1998년 시행); 1996년(연금감독, 1998년 시행); 2009년(사회부조 연금); 2014년(사회보호)

### 2 제도형태

- **의무개인계좌 및 사회부조**
- ※ 1998년 기준 55세(여 50세) 이상인 가입자 및 1998년 기준 개인계좌제도를 선택하지 않은 36세 이상의 근로자는 부과방식의 구사회보험제도가 적용됨; 정부는 사회보험제도에 보험료를 납부한 계좌가입자를 위한 물가지수채권을 발행함; 채권은 사회보험제도의 가입자 납부 보험료에 이자를 가산한 것과 동일함
- ※ 신규 연금 수급자에 대한 전국민 기초노령연금(사회부조)은 2017년 6월부터 종료되어 기존 수급자에 한해서만 연금이 지급됨

## ○ 의무개인계좌

- 당연적용 :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 근로자
- 임의적용 : 자영자·소규모사업장 운영자·해외거주 엘살바도르 국민

## ○ 사회부조 : 극빈곤지역에서 거주 중인 자

## ○ 가입자

## • 의무개인계좌

- 월 가입소득의 7.25%
- 보험료를 산정하기 위한 하한 소득 : 법정 월 최저임금 (경제부문에 따라 상이함, US\$202.88(농업 및 면직물 산업)~US\$304.17(상업 및 서비스 산업))
- 보험료를 산정하기 위한 상한 소득 : US\$6,500
- 월 최저연금액을 초과한 연금을 매월 받는 수급자는 연대보증기금에 특별 보험료를 납부함. 납부보험료의 범위는 연금액의 3%(월 연금액이 최저연금액의 3배 이하인 경우) ~ 10%(월 연금액이 최저연금액의 8배 초과)임

※ 월 최저연금액은 US\$207.60

## • 사회부조 : 없음

## ○ 자영자

## • 의무개인계좌

- 신고 가입소득의 15%. 자영자 보험료 중 8.05%(2050년까지 11.1%로 상향 예정)는 개인계좌로, 0.8797%는 장애 및 유족보험, 1.0703%는 관리운영비로 배정되며 나머지 5%(2050년까지 2%로 하향 예정)는 연대보증기금으로 할당됨
- 보험료를 산정하기 위한 하한 소득 : 법정 월 최저임금(경제부문에 따라 상이함, US\$202.88(농업 및 면직물 산업)~US\$304.17(상업 및 서비스 산업))
- 보험료를 산정하기 위한 상한 소득 : US\$6,500

## • 사회부조 : 없음

## ○ 사용자

## • 의무개인계좌

- 가입 임금총액의 7.75%. 사용자 보험료 중 0.75%(2050년까지 3.85%로 상향 예정)는 개인계좌로, 0.8797%는 장애 및 유족보험, 1.0703%는 관리운영비로 배정되며 나머지 5%(2050년까지 2%로 하향 예정)는 연대보증기금으로 할당됨

- 보험료를 산정하기 위한 하한 소득 : 법정 월 최저임금(경제부문에 따라 상이함, US\$202.88(농업 및 면직물 산업)~US\$304.17(상업 및 서비스 산업))
- 보험료를 산정하기 위한 상한 소득 : US\$6,500
- 사회부조 : 없음

## ○ 정부

- 의무개인계좌 : 필요한 경우, 보조금 부담; 사용자로서 보험료 납부
- 사회부조 : 총 비용

## 5

### 급여종류별 수급요건

## ○ 노령급여

- 노령연금(의무개인계좌)
  - 보험료 납부기간이 25년 이상인 60세(여성 55세) 도달자; 2004년 12월 31일 전까지 보험료 납부기간이 30년 이상인 경우 연령제한 없음
  - 최저보장노령연금 : 보험료 납부기간이 25년 이상인 60세(여성 55세) 도달자. 의무 개인계좌 잔액이 20년 미만 동안 월 최저노령연금 재원조달로 사용되어 소진된 경우 지급; 최저보장노령연금은 노령연금 청구 후 20년이 경과하였거나 또는 85세 (여성 80세) 도달한 경우 중 먼저 발생하는 사례에 따라 지급 중단되며 동일 금액의 장수 연금으로 대체됨
  - 월 최저노령연금 : US\$207.60
  - 장수연금 : 노령연금 청구 후 20년이 경과하였거나 또는 85세(여성 80세) 도달하는 경우 중 먼저 발생하는 사례에 따라 지급됨
  - 특별보험료보조금 : 연대보증기금에 특별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85세 도달자
- 영구노령급여(의무개인계좌)
  - 보험료 납부기간이 21년-24년 된 60세(여성 55세) 도달자. 영구노령연금에 대한 수급 자격을 갖춘 가입자의 경우 노령수당으로 대체 청구할 수 있음
  - 장수급여 : 계좌잔액이 영구노령급여 재원조달로 사용되어 소진된 경우 지급
- 일시노령급여(의무개인계좌)
  - 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-20년 된 60세(여성 55세) 도달자. 일시노령연금에 대한 수급 자격을 갖춘 가입자의 경우 노령일시금으로 대체 청구할 수 있음
- 노령일시금(의무개인계좌) : 납부기간이 25년 미만인 60세 남성 또는 55세 여성
- 기초노령연금(사회부조) : 기타 다른 연금을 수급하지 않으며 사회보장제도에 납부한 적이 없는 70세 도달자

## ○ 장애급여

- 장애연금(의무개인계좌)
  - 66% 이상의 장애판정을 받아야 하며 장애 발생 전 개인계좌에 보험료를 납부 중

이었거나 장애 발생 전 12개월 중 6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자. 무직자의 경우 장애 발생 전 12개월 이내에 장애가 발생하고 최종 납부월 이전 12개월 중 6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함

- 부분장애 : 50% 이상 65% 이하의 장애판정을 받아야 하며 완전장애연금 납부요건을 충족해야 함
- 최저보장장애연금 : 장애 발생 전 보험료 납부기간 10년 이상; 장애 발생 전 5년 중 3년 이상 보험료 납부; 사고로 인한 장애가 발생하였고 장애 발생 전 보험료를 납부 중이었던 경우 장애 발생 전 12개월 중 6개월 이상 보험료 납부해야 함. 의무개인계좌 잔액이 장애연금 조달에 활용되어 소진된 경우 지급
- ※ 최저보장장애연금은 법정퇴직연령에 도달하는 경우 지급이 중단되며 이후 최저보장노령연금으로 대체됨
- 장애위원회에서 장애정도를 판정함

## ○ 유족급여

### • 유족연금(의무개인계좌)

- 사망자가 사망 당시 개인계좌에 보험료를 납부 중이었으며 사망 전 12개월 중 6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했어야 함. 무직자의 경우 사망 전 최종 12개월 동안 보험료를 납부하고 최종 납부 이전 12개월 중 6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했어야 함
- 수급가능 유족 : 배우자 또는 3년 이상 동거한 파트너, 18세 미만 자녀(학생인 경우 24세, 장애가 있는 경우 연령제한 없음), 피부양 부모
- 최저보장유족연금 : 보험료 납부기간 10년 이상; 사망 전 5년 중 3년 이상 보험료를; 사고로 인한 사망하였고 사망 이전에 개인계좌에 보험료를 납부 중으로 사망 전 12개월 중 6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했어야 함. 의무개인계좌 잔액이 유족연금에 조달되어 소진된 경우 지급

## 6

## 급여종류별 지급액

## ○ 노령급여

### • 노령연금(의무개인계좌)

- 가입자는 ① 프로그램 인출(programmed withdrawal)방식 ② 사보험사로부터 연금 수령 ③ 두 방식의 혼합형태 등 세 가지 지급 옵션이 있음(1998년 노령사회보험제도에서 개인계좌제도로 변경을 선택한 근로자의 경우, 기존 제도에 따른 연금은 퇴직 시 개인계좌잔액과 합산됨). 프로그램 인출방식을 선택한 경우 연금은 최대 20년(월 지급 240개월; 크리스마스 지급 20개월)동안 지급됨. 지급 옵션에 관계없이 월 연금액은 월 최저노령연금액 이상이어야 함
- 월 최저노령연금 : US\$207.60
- 최저보장노령연금 : 월 최저노령연금 지급
- 장수연금 : 최소 최저노령연금 이상 지급

- 특별보험료보조금 : 노령연금의 10% 지급
- 최저보장노령연금과 장수연금은 연대보증기금에서 지급됨
- 지급시기 : 연 12번 매월 지급 및 13번째 크리스마스분 지급됨(월 연금액의 50%)
- 영구노령급여(의무개인계좌)
  - 총 계좌잔액을 20년 동안 지급될 월 급여액으로 나누어 지급
  - 월 급여액은 월 최저노령연금액(US\$ 207.60)보다 적을 수 있음
  - 장수급여 : 장수급여는 가입자가 수급한 영구노령급여와 동일함
- 일시노령급여(의무개인계좌) : 월 최저노령연금(US\$207.60)의 40%-60%(가입자의 보험료 납부연수에 기초) 또는 계좌잔액을 가입자의 보험료 납입연수의 12배로 나눈 금액 중 큰 금액을 지급
- 노령일시금(의무개인계좌) : 총 계좌잔액에 연대보증기금으로 납부한 총액을 합산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
- 기초노령연금(사회부조) : 격월로 \$100 지급

## ○ 장애급여

- 장애연금(의무개인계좌)
  - 완전장애 : 가입자 기본급의 50% 지급
  - 부분장애 : 가입자 기본급의 36% 지급
  - 기본급은 최종 12개월 동안의 가입자 월평균소득임
  - 최저보장장애연금 : 완전장애 또는 부분장애에 대한 월 최저연금액 지급
  - 월 최저연금액 : 완전장애인 경우에는 US\$207.60, 부분 장애는 US\$145.32

## ○ 유족급여

- 배우자연금(의무개인계좌)
  - 사망자가 수급 중이었거나 수급자격이 있었던 노령 또는 장애연금의 50%를 자녀가 있는 배우자 또는 동거하는 파트너(만약 배우자나 동거하는 파트너가 없을 경우 연금은 고아에게 지급)에게 지급; 수급가능 고아가 없을 경우 60% 지급
- 고아연금(의무개인계좌)
  - 사망자가 수급 중이었거나 수급자격이 있었던 노령 또는 장애연금의 25%를 고아 각각에게 지급; 완전고아의 경우 40% 지급
- 피부양부모연금(의무개인계좌)
  - 사망자가 수급 중이었거나 수급자격이 있었던 노령 또는 장애연금의 20%를 피부양 부모 각각에게 지급; 생존한 부모가 1명일 경우 30%. 수급가능 배우자 또는 파트너가 없을 경우 각 부모에게 40%(생존한 부모가 1명일 경우 80%)
  - 최저보장유족연금 : 월 최저유족연금액 지급
    - 월 최저유족연금액 : US\$207.60
    - 모든 유족급여 합산액은 사망자가 수급 중이었거나 수급자격이 있었던 노령연금의 100%를 초과 할 수 없음
  - 급여주기 : 연 12번의 월 지급 및 13번째 크리스마스분 지급됨(월 연금액의 50%)

- **금융시스템 감독청(Superintendent of Financial System)**
  - <http://www.ssf.gob.sv>
  - 전반적인 감독
  
- **개인연금기금운용회사(AFPs)**
  - 개인계좌 운영 및 보험료 징수
  
- **지역발전사회투자기금(Social Investment Fund for Local Development)**
  - <http://www.fisdل.gob.sv>
  - 기초노령연금 관리

<2019년 ISSA 자료>